

하나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 EC192]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하나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45% 이상을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 BBB+이하인 고위험고수익채권에 투자하고, 이를 포함하여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고위험고수익채권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로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하나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BBB+ 이하, 단기사채 A3+ 이하 등급의 고위험고수익채권(하이일드채권)을 포함한 국내채권 60% 이상 투자하고, 그 밖에 40% 이하 범위내에서 공모주 등에 투자합니다. 1) 채권운용전략 ■ 고위험고수익채권(하이일드채권) 투자전략 ①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 보유비율이 45% 이상 유지. 다만, 편입 시 신용평가등급은 BBB- 이상 ~ BBB+ 이하(단기채권의 경우 A3- 이상 ~ A3+ 이하)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② 신용등급 BBB+(단기사채 A3+)이하의 발행사 중 당사 하이일드채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유니버스 풀 내에서 선별 ③ 시장상황, 발행사 신용도 및 유동성 감안하여 편입 대상 채권의 투자 만기 및 비중 차별화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을 50% 이하로 유지. 다만, 투자자의 환매, 보유 채권의 가격 및 신용등급 변동 등 투자대상 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50%를 초과하게 될 경우 3개월 이내 해소 ■ 우량 채권 투자전략 ① 유동성 관리를 위해 국공채 및 은행채, AA- 이상 고유동성 자산 위주로 편입 예정 ② 시장상황 고려한 저평가 채권 매수 탐색

2) 공모주 투자전략

- ① 3개 주요 Factor 확인(펀더멘탈, 수급, 매도전략)
- ② 저조한 경쟁률에 따른 과배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의 펀더멘탈 분석을 기본적으로 수행
- ③ 공모 구조 분석을 통한 수급 예상을 통해 수익률 극대화 시나리오 분석
- ④ 상장 초기 매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이익을 확정 +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확약을 통해 수익률 극대화 모색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 상황,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Benchmark) : 해당사항 없음

[위험관리]

리스크관리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펀드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2026년 06월 04일 기준)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연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80% 이내	0.915	0.400	0.77	0.926	174	273	377	600	1,2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465	0.950	1.15	1.479	152	311	478	837	1,906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40% 이내	0.715	0.200	0.56	0.729	114	193	275	451	97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990	0.475	0.73	1.006	103	211	325	570	1,2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없음	1.035	0.520	-	1.045	107	219	338	592	1,3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없음	0.935	0.420	-	0.945	97	199	305	535	1,218

*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및 구체적인 투자비용 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 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도표의 총보수·비용은 기타비용을 포함한 수치이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1,000만원 투자시 부담하는 총비용 예시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를 또는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 [A형과 C형], [A-E형과 C-E형]의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1년], [약1년]이나, 이는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2026년 06월 04일 기준)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5/06/05 ~ 2026/06/04	2024/06/05 ~ 2026/06/04	2023/06/05 ~ 2026/06/04	2021/06/05 ~ 2026/06/04	(%)
펀드ClassC	2024-06-21	5.52				3.70
수익률 변동성(%)	2024-06-21	1.79				1.71

*비교지수: (BM없음)

*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별도로 표시한 기준일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C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인력

(2026년 06월 30일 기준)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혼합채권형_국내,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채권) 책임	김여진	1980	부장	1	481	26.69	-	-	-	2.7년
(주식) 책임	황은미	1984	부장	9	1,025	26.69	-	-	-	15.6년
(주식) 부책임	박영민	1997	사원	2	642	-	-	-	-	1.1년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적을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적은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 기준일 현재 동 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

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채권 및 공모주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하이일드채권) 투자위험	하이일드채권은 일반채권보다 더 높은 자산 가치의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일드채권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더 큰 폭의 가치하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채권의 낮은 신용등급은 발행인의 재무상황의 불리한 변경이나 금리 상승이 채권 보유자들에 대한 발행인의 지급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하이일드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높은 이자율(수익률)을 제공하는 대신에, 재무상황 악화,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 할 위험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일드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완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일드채권 등은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에서 매각 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 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공모주에 투자하며, 공모주 투자는 성격상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 공모주는 기존의 상장주식보다 일반적으로 가격변동성이 큼니다. -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리한 가격에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투자된 자산의 환매가 제한되거나, 중단 또는 연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화 과정에서 적정가격에 투자를 청산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공모주 투자는 투명하지 않은 기업정보 및 미래 투자위험을 알려주는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 공모주 투자 시 예상치 못하게 기관경쟁률이 저조한 경우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한 물량 전체를 인수해야 하는 높은 인수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관계인수

		인(펀드설정 당시 하나증권)이 주관 또는 인수하는 IPO종목에 대해서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에도 불구하고 취득 가능한 물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및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 미적용 위험	이 투자신탁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서 매 분기 종료일 기준 BBB+ 이하 (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채권(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45%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이상일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분리과세 및 공모주 우선배정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규정 및 정책 등이 변경되거나 이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기 투자비율 미 충족 시에는 분리과세 또는 공모주 우선배정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17시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매입 · 17시 경과 후 : 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 17시 이전 : 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 17시 경과 후 : 4영업일 기준가 5영업일 지급								
환매 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기준가	· 산정 방법 -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과세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table><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tr><td>가입 자격</td><td>가입제한 없음(단, 세제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td></tr><tr><td>가입 기한</td><td>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td></tr><tr><td>계약 기간</td><td>1년 이상 *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미적용</td></tr></table>	구분	주요 내용	가입 자격	가입제한 없음(단, 세제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	가입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계약 기간	1년 이상 *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미적용	
	구분	주요 내용								
	가입 자격	가입제한 없음(단, 세제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								
가입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계약 기간	1년 이상 *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미적용									
- 연금저축계좌의 세제(Class C-P, C-PE, S-P 수익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별도의 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 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Class C-P2, C-P2E, S-P2 수익자에 한함):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 업자	하나자산운용 대표전화 : 02-3771-7800, 홈페이지 : www.hanaam.com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10조원, 1좌단위 모집)
효력발생일	2026년 07월 31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 료	수수료 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 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 타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기관 (F)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1)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2) 법시행령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3)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나 500억 이상 매입한 법인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라이어카운트계좌, 특정증권신탁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고액(I)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 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aam.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aam.com)